●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7.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1

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2. 07. 13.

다. 회 부 일 : 2022. 07. 14.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8,969 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3억 3천2백만원(1.6%)이 증 가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증가에 있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	년도	증감(비율)
	7,	T	2021에/전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5선(미월)
	합	계	5,414,678	5,896,924	5,801,592	95,332 (1.6)
	일반.	회계	3,736,712	4,144,649	4,059,241	85,407 (2.1)
		경상적	14,970	13,511	13,548	$\triangle 37 \triangle (0.3)$
	세외수입	임시적	39,416	46,041	48,175	$\triangle 2,133 \triangle (4.4)$
		지방행정제새 부과금	4	3	3	
	지방.	교부세	80	0	0	
	국고보	조금 등	3,665,314	4,066,325	3,976,704	89,621 (2.3)
	الا	방채	2,400	0	0	
	보전수	입 등 및	14505	10.700	00.011	. 0.040 . (0.0)
	내투	- - - - 기래	14,527	18,768	20,811	$\triangle 2,043 \triangle (9.8)$
_	의료급여기 [,]	금특별회계	1,677,966	1,752,275	1,742,350	9,924 (0.6)
		경상적	189	1,050	189	861 (455.6)
	세외수입	임시적	2,784	2,855	2,444	412 (16.9)
		지방행정제새 부과금	159	1,250	159	1,091 (686.2)
	국고보조금 등		830,958	867,986	867,986	
	보전수입 등 및		0.40.050	070.104		5.5 01 (0.0)
	내투	! 거래	843,876	879,134	871,573	7,561 (0.9)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6,461 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6억 4천만원(2.3%)이 증가하 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ユゖ	0001세값	20224	スル(ロ) (2)	
구분	2021예산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비율)
합 계	8,784,988	9,646,195	9,433,555	212,640(2.3)
 행정운영경비	708	634	634	_
재무활동	1,004,278	1,205,213	1,132,736	72,477(6.4)
 사업비	7,780,002	8,440,348	8,300,185	140,163(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고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 정기조를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이는 '약자와 동 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 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
 - 서울시의 2차 추경안은 ①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 (4,011억 원) ②인프라 투자 등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 경쟁력 제고 (3,484억 원) ③ 문화·여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 상회복 가속화 (9,262억 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음.
-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 6조 3,709 억 가운데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은 2,126억원으로 이는 복지정책실의 기정예산 9조 4,335억 대비 2.3%가 증가한 것임.
 - 복지정책실의 추경 편성사업은 시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①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약자와의 동행(쪽방주민 대상 동행식당운영, 노숙인 급식지원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체계 강화(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노인 기초연금 지급, 긴급복지 지원) 등이이에 해당함.

¹⁾ 서울시 보도자료(2022.7.13.). "서울시, 올해 추경(안) 6조 3,709억 긴급편성···'동행·매력 특별시'마중물 투자"

○ 복지정책실에서는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증감 반영, 폭넓은 취약계층 지원, 기능보강 등 복지인프라 확충·개선, 2021회계 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불용예산 사업비 조정 등 총 4개 분야 사업 으로 나눠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성하였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8,969 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3억 3천2백만원(1.6%)이 증 가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4		증감(비율)
			2021에 단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6 '마(미린/
	합	계	5,414,678	5,896,924	5,801,592	95,332 (1.6)
	일반3	회계	3,736,712	4,144,649	4,059,241	85,407 (2.1)
		경상적	14,970	13,511	13,548	$\triangle 37 \triangle (0.3)$
세외	수입	임시적	39,416	46,041	48,175	$\triangle 2,133 \triangle (4.4)$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	3	3	
	지방	교부세	80	0	0	
	국고보	조금 등	3,665,314	4,066,325	3,976,704	89,621 (2.3)
	기	방채	2,400	0	0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527	18,768	20,811	$\triangle 2,043 \triangle (9.8)$
의료급	급여기	금특별회계	1,677,966	1,752,275	1,742,350	9,924 (0.6)
		경상적	189	1,050	189	861 (455.6)
세외	수입	임시적	2,784	2,855	2,444	412 (16.9)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59	1,250	159	1,091 (686.2)
Ş	국고보조금 등		830,958	867,986	867,986	
보전=	수입 등	· 및 내부거래	843,876	879,134	871,573	7,561 (0.9)

○ 주된 증액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은 복지정책실 세입 전체 증가액 953억 3천2백만원 가운데 896억 2천 1백만원으로 총 세입증액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확정된 중앙정부의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과 등이 반 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6,461 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6억 4천만원(2.3%)이 증가하 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7.8	0001세값	2022Կ	スプ(u) O.)	
구분	2021예산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비율)
합 계	8,784,988	9,646,195	9,433,555	212,640(2.3)
행정운영경비	708	634	634	_
재무활동	1,004,278	1,205,213	1,132,736	72,477(6.4)
사업비	7,780,002	8,440,348	8,300,185	140,163(1.7)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에서는 7개 과 전체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지원과 8건(775억 7천만원), 복 지정책과 11건(740억 6천6백만원), 어르신복지과 5건(232억 5천6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8건(179억 2천4백만원), 지역돌봄복지과 4

건(107억 1천6백만원), 자활지원과 8건(74억 5천6백만원), 인생이모 작지원과 1건(16억 5천1백만원)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9,433,555	212,640	9,646,195	2.3	47
복지정책과	4,275,093	74,066	4,349,159	1.7	11
지역돌봄복지과	283,756	10,716	294,472	3.8	4
어르신복지과	3,116,374	23,256	3,139,631	0.7	5
인생이모작지원과	335,670	1,651	337,321	0.5	3
장애인복지정책과	282,644	17,924	300,568	6.3	8
장애인자립지원과	938,306	77,570	1,015,877	8.3	8
 자활지원과	201,711	7,456	209,166	3.7	8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47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제2회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18건 (1,838억 7백만원),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정·운영 등 폭넓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16건(89억 7백만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인프라 확충 등 복지인프라확충·개선을 위한 사업 5건(28억 5백만원), 의료급여 사업 등 21년도결산결과 반영 및 불용예상 사업비 조정 3건(171억 2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제외한 주요 정책사업 세부내역은 다음 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9,433,555	212,640	9,646,195	
	복지정책과	4,275,093	74,066	4,349,159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873	292	12,165	○ 서비스 이용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증액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2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2,457	△729	1,728	○ 서비스 이용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조정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3	청년사회서비스사 업단 운영	127	△127	0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곤란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조정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4	보훈단체 지원	3,472	970	4,452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및 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출범(`22.3.)에 따른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지원
5	보훈대상자 등 지원	70,581	△2,880	67,701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6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0	237	237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23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 국제포럼 개최 및 자문단 운영
7	가 <u>족돌</u> 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0	120	120	○ 서울시 내 저소득층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지원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관리체계 마런
8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50,680	1,278	51,958	 ○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을 위한 청년 특화 전담센터 설치
9	의료급여사업	1,739,472	9,924	1,749,396	○ `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등에 따른 세입예산 변동 반영
1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55,198	62,400	317,597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매칭시비 확보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지역돌봄복지과	283,756	10,716	294,472	
11	긴급복지지원사업	30,155	10,500	40,655	○ 긴급복지의 정부 2차 추경 국비 증액분 70억에 대한 매칭시비 35억 확보
12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869	50	919	○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종교단체간 협의체 운영비 지원
13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100	△50	50	○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대상 공모 결과(금천구, 50백만원 지원 결정)에 따라 미선정 국비 금액(50백만원) 감추경
14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지원	-	216	216	○ 사회적 고립기구 약 36천명에 대한 AI안부확인서비스 주 1회 지원
	어르신복지과	3,116,374	23,256	3,139,631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241,288	△15,030	226,258	○ 가내시 대비 최종액 차이 · 의료급여부담금 잔액 및 관리운영비 정산에 따른 감액
16	어르신 놀이터 조성	-	400	400	○ 어르신의 놀이욕구 충족 및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건강관리를 위한 전용 놀이터 조성
17	기초연금 지급	2,702,746	37,407	2,740,153	○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4,712	344	45,057	○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	인생이모작지원과	335,670	1,651	337,321	
19	보람일자리 사업	19,061	335	19,396	○ 저소득 어르신 급식활동 강화를 위해 '어르신 식사지원단' 123명 지원
2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3,725	1,016	4,741	○ 어르신들의 안전확보와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건립비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 동대문구립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과	202 644	17 094	200 569	건립 시업비 지원
	상대인국시정적과	282,644	17,924	300,568	o No EHZ (c) Aleka Zali
2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8,788	13,247	112,035	 신규 돌봄종사나 인건비 증액, 촉탁의 운영지원 확대로인한 운영비 증가 인건비 및 운영비 13,247백년
21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국비)	545	19	564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종사자 업무강도를 고려한 연장근로수당 추가 확보 및 인건비·운영비 부족분 지원
2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431	431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아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탈시설 장아안에게 공공입다주택 지원 사업비 확보
24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793	793	○ 서울시 장애인 버스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5	학대 피해장아아동 쉼터 운영	-	1,142	1,142	○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이동 쉼터 신규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 설치비 확보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6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662	240	1,902	○ 커리어플러스 이전에 따른 시설필수공간 확보를 위한 리뉴얼 공사 추진
2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76	235	611	○ 거주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6개소 국비 추가에 따른 증액
,	장애인자립지원과	938,306	77,570	1,015,877	
2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464,490	59,404	523,894	○ 코로나19 24시간 긴급돌봄 및 한시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 예산 추가 확보
29	장애인활동지원 시업-활동보조 가산급여	2,492	7,574	10,066	○ 코로나19 24시간 긴급돌봄 및 한시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예산 추가 확보
30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0	94	144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추가예산 확보 1백만원*약8명(월평균 신청증가 인원)*12개월
3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000	3,448	8,448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비우처 이용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3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579	217	1,796	○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 추진 - 복지관 6개소 면적에 따른 안전진단비 지원
3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8,612	848	19,460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 증기로 인한 추가 지원 예산 확보
34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933	932	1,865	○ 강동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 '22.12월말까지 공사비 부족분 지원
	자활지원과	201,711	7,456	209,166	
35	거리노숙인 보호	11,121	564	11,675	 ○ 거리노숙인 급식개선을 위한 노숙인시설 급식지원 확대 - 이용시설 급식단가 인상 (3,500원-4,000원) - 급식횟수 확대(1일1식→2식) 등
36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지원)	2,560	2,914	5,474	○ 물가급증으로 취사여건이 열악한 쪽방주민을 위해 지역식당을 활용한 공공급식 지원 -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 50개소 지정, 1일 1식 8천원 지원
37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9,937	85	10,022	○ 물기급증에 따른 시설 입소자 급식비 단가 인상 지원 (3,500원—4,000원)
3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343	76	4,419	 ○ 물기급증에 따른 시설 입소자 급식비 지원 - 보장시설 생계비(1식 약 3천원)에 1천원 추가 지원)
39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9,851	308	10,159	○ 물기급증에 따른 시설 입소자 급식비 지원- 보장시설 생계비(1식 약 3천원)에 1천원 추가 지원)
40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263	175	438	하반기 사례관리자(16명)추가 배치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 반영
4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8,283	3,143	21,426	추가 소요예산조사결과(복지부) 에 따른국비 변경내시 반영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389)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모형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²) 및 제3조³)를 근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게 기준 중위소득 85%대비 미달액의 50%를 지급하는 전액시비사업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추경안에 2억 3천7백만원을 편성함.

〈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추경안 명세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237,000	(x-)	(_X -) 237,000		
사무관리비	(x-) 87,000		(x-) 87,000	○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운영 -회의수당 (150,000원 * 12명 * 6회) - 자료제작 등 회의 운영비	12,000 10,800 1,200 5,000 70,000

²⁾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 이 경우,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³⁾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하 "서울안심소득"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제2조제1항제13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5호의 서울 안심소득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행사운영비	(x-) 150,000	, ,		(x-)		70,000 50,000 20,000 80,000 30,000 50,000

- 서울시에서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 등 정책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음.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신복지모델로서 추진하는 서울 안심소득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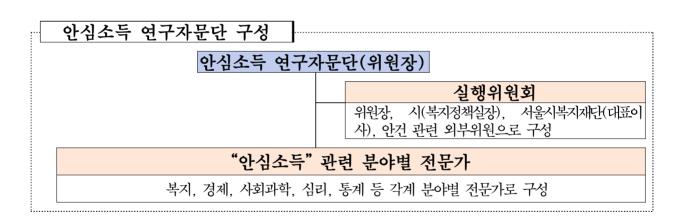
(표) 현금성 복지사업 비교

구 분	선정기준	지급금액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비 1인 최대 583,444원	
서울안심소득	기 준중 위소득 50%이하 (※22년 1단계 기준임)	안심소득 1인 최대 826,550원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46%이하	생계비 1인 최대 291,722원 (국민기초 생계급여의 1/2)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및 '23년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① 국제포럼('22년 11월 예정)개최 (1억 5천만원) ②정책홍보비(7천만원),③ 자문단 운영비 등(1천 7백만원)임.
-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먼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12회 회의를 통

해 지원대상, 사업규모, 지급률, 성과평가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하였으며,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전문가 회의 및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21.11.1)가 완료되었음.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22.7월)됨에 따라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22.6월 구성하였음.
 - 연구 자문단은 총 31명(국내 24,국외 7)으로 복지·경제·경영·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및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자문단 내에 실행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안심소득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할 계획임.



○ 또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학술 포럼을 22년 11월 개최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형성하고자 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규모: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비교집단 1.600가구

▶ 1단계(3년) : 기준중위 50% 이하 500가구 선정

▶ 2단계(2년) : 기준중위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대비 미달액의 50%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2년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 지원기간 : '22.7월~'25.6월(3년)

- 동 시범사업의 1단계('22년) 현재 참여가구 모집과 최종선정이 끝난 단계이며 상세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선정: '22.3.28 ~ 6.28



- 선정결과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4~64세 층 (50%)이 가장 많음.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임.

구	구 분		2인가구 (29%)	3인가구 (16%)	4인이상 가구 (15%)
계	500	200	143	81	76
39세 이하 (30%)	150	60	43	24	23
40-64세 (50%)	250	100	71	41	38
65세 이상 (20%)	100	40	29	16	15

-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이며,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이며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급여 첫 지급(시범사업 시행)일은 '22.7.11이며, 매월 20일 지원 가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일괄 체크카드 결제 또는 현금 인출을 통해 사용하도록 설계됨.
-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기간은 '22년~27년(총 5년)이고, 연구방법은 지원집단 및 비교집단의 가구주, 가구원 대상 온라인 및 대면조사, FGI, 소득변화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성과분석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음.

〈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절차

사전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추적조사
• 연구체계 수립	•	• 진행단계에서의		· 사업종료 단계에서의		
(설문·성과지표개발)		변화 측정 · 사전조사와의 시 ▶	변화 측정 ·사전, 중간조사 결	•	료 이후의 변화 조사 · 안심소득의 중기	
· 참여가구기초정보 조사		계열 비교 분석		과와의 비교 분석		효과 예측
사업 시작 전(1회)		반기별(5회)		사업종료 시점(1회)		종료 1년 후(1회)

- 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총 35억 3천6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 30억원과 운영비 5억 3천6백만원이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지출되고 있음.
- 추경으로 편성된 시범사업 연구자문단 운영 및 국제포럼은 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나 국제포럼은 안심소득이 시범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에⁴⁾ 따르면 ① 안심소득이 아직 시범사업 단계 로 이 제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며 기본소득 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② 안심소득이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안심소득은 1인가구일수록 다인 가구에 비해 급여액 산정시 유리해서 가족해체를 유도하거나 편법적 방식으로 가족구성 형태를 바꾸게 할 수 있음. 가구 분리나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이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됨.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확립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⁴⁾ 윤성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 소득세), 이슈와 논점 제1918호,2022.1.19.국회입법 조사처

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396)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12억 7천8백만원을 증액한 519억 5천8백만원 의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였음.
- 추경 사유는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 추진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와 「광역 청년특화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에는 모니터링 용역비, 인건비, 매뉴얼 제작비 등이 포함된 6억 1천8백만원,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추진에는 청년특화센터 보증금 및 이전비, 인건비, 재무코칭 교육 개발 등이 포함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계	(_X -)	(x-)	(_X -)
	51,958,346	50,680,046	1,278,300
출연금	(x-)	(x-)	(x-)
	51,958,346	50,680,046	1,278,300

(1)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전담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추진개요

○ 센터명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 추진인력 : 1센터 2팀 총인원 10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 추진내용

①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 : 사각지대 발굴(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도출

②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 : IoT 기기·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활용한 현장대응체계 지원

③ 고립가구 지원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 : 맞춤형 교육과 관련 정책 개발

- 복지사각지대란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제공받는 급여의 양이 욕구충족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급여의 내용이 수급자의 개별적 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경우로 정의할 수 있음.5)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는 복지 사각 지대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신의 의지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복지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의 주요 사업 중 대부분은 이 미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민관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복 지재단에서도 유사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수행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립위험 실태조사 및 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현황 파악 등은 기존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직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 지역 맞춤형 현장대응 실무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 도출 역시 기존 재단의 교육센터와 정책연구실

⁵⁾ 홍성대(2011).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입법과정책 3(2). 국회입법 조사처

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설센터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는 복지사 각지대 전체에서 일부에 해당하며, 그 특성상 현황파악이 어렵고, 규모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센터를 신설해 대응하는 것은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음.
 - 한 예로, 22년 4월 발생한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의 경우, 해당 모자는 사망 전 두 차례나 생계급여 신청을 했으나 재산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러한 사례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음.
-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복지사 각지대 가운데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선행된 뒤 접근하는 방법 등을 검토 후 추진하는 방안에 대 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추진

○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은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금융복지상담 「(광역) 청년특화 센터」설치·운영 추진개요

○ 명 칭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광역 청년특화 센터」

○ 위 치: 강남권

○ 추진인력 : 총 인원 10명 (팀장 1명, 상담관 8명, 행정 1명)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일반시민 상담도 병행)

	금융취약 청년	자산이 부족한 청년	
사업대상	(저소득자, 채무보유자	(대학생, 취준생,	자산이 넉넉한 청년
	등)	사회초년생 등)	
수행 영역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청년특화 센터)	미래청년기획단 (서울 영테크)	민간 영역 (금융회사, 유튜브 등)

- 현재 복지재단의 계획에 따르면 청년 접근성 등을 고려해 기존 강남, 송파센터를 통합하여 강남권에 청년특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 개인맞춤형 재무상담, 금융 교 육. 부채상담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임.
- 복지재단은 이미 기존조직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해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해당 사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실시하는 것임.

〈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22년도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담건수	1,780	274	246	329	325	299	307
수료인원	871	138	110	163	171	141	148

- 해당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의 상담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반영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에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겠 다는 것이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의 골자임.
- 그러나, 해당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지원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어느 정도 나 타나고 있음.
 - 〈표〉서울금융복지상담 청년특화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 비교

	서울금융복지상담 청년특화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일반시민 상담도 병행)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
사업소현황 (서울지역)	기존 강남, 송파센터 통합하여 강남권에 청년특화센터 운영 예정	중앙지원센터 포함 총 6개 지원센터 (강남, 관악, 광진, 노원, 양천)
주요 지원내용	· (금융)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운영, 현장 전문가 사례위주 교육 제공 · (재무) 재무상태 진단, 분석, 목표 설정을 통한 재무개선 지원 및 모니터링 · (채무) 부채문제 보유 청년의 채무조정 상담제공 · (기타) 청년대상 금융복지 분야별 콘텐츠(부채, 신용 및 재무관리, 금융상식 등)를 한 곳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제공	· 자금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 지원 · 채무조정 지원 : 과중한 채무로 힘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지원,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계지원 · 종합상담 : 맞춤대출, 고금리전환, 휴먼예금 조회 및 지급, 신용정보조회 및 진단 등을 포괄적으로 상담 · 고용·복지 연계 : 지자체, 고용·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상담, 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제공

- 더욱이, 이미 재단에서 시행 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의 경우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기초상담을 진행하고, 2차 내방상담을 통해 1:1 재무컨설팅을 제공한 건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전화상담이 실제 재무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음. 이미 재단에서 진행 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에서도 청년들의 전화상담이 실제 내방상담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도 사업의 확장에 있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음.

(3) 종합 의견

- 집행기관에서 산하 재단을 활용해 시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복지재단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인력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인건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출연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될 소지가 있음.
- 특히 복지재단은 최근 5년간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 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인력, 기존추진 사업 등을 고려한 복지재단 전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금번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라는 점에서 출연의 규모와 시급성,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표〉서울시복지재단 최근 5년 인원 변화 및 인건비 변화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인원 (정원/현원)	151 / 149	164 / 162	171 / 170	180 / 176	180 / 178	정규직
인건비 예산	9,382,510	9,837,448	10,596,225	11,293,833	11,820,387	수당, 퇴직급여 포함

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p.423)

○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7조⁶)를 근거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 가생활 지원을 위해 공원 등 유휴 공간에 어르신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액시비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4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400,000	(x-) 0	(_X -) 4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400,000	(x-)	(x-) 400,000	

⁶⁾ 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서울 시 65세 이상 인구수는 1,632,41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2%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 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어르신 관련 질환, 고령자 안전사고 증가로 건 강보험료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음.7)
- 우리나라 어르신은 주로 등산,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지 만 이러한 운동만으로는 몸의 중심을 잡도록 돕거나 근력 퇴화를 방지 하기가 어려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인구중 42%가 우울증을 지니 고 있어⁸⁾ 어르신 우울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 및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2020년 국회의 시니어 콘텐츠포럼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야외 운동 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인 '어르신놀이터'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어르신을 위한 놀이형 놀이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어르신 놀이터'로 지칭되는 어르신 놀이공간은 단순히 어르신의 신체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구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노인의 신체능력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으 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이라 하겠음.
- 2021년 전국 최초 충남 공주시에 어르신 놀이터가 개장한 이후 인천 광역시, 포항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7) 2019}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했으며,2025년에는 60조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

⁸⁾ 김정식(2012) 주제중심 통합적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요양시설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경안은 ①어르신 놀이터 운동시설 구입·설치비 (2억원),② 어르신 놀이터 바닥 및 기초공사비(2억원)로 노인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각종 운동기구 10여 종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에 서는 올해 4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임.
- 아직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자치구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집행기관에 서는 추경예산 확정 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에 있음.
- 어르신 놀이터는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면서 노년층의 건강과 여가 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과 너무 멀 리 떨어지지 않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소등 접근성이 중요하다 하겠음.
 - 언론보도에⁹⁾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천호근린공원은 한국형 어르신 놀이터의 현 모습이며 "음악분수대와 야외무대, 체력단련 시설을 갖춰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노년층의 휴식공간으로 특화돼 있으나, 울타리를 쳐 입출입이 제한돼 있음. 또 경사로가 많아 안전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를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 어르신에게 친숙한 공간 인근이 나 유휴공간 등에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과정에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접근성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 및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 등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안도 향후 집행기 관에서는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노인친화형 공원 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의도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으

⁹⁾ 출처: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1687) "[인터뷰 上] 국내에서도 어르신놀이 터 도입, 기대와 우려는?" 2020.12.24. <2022.7.20. 검색>

- 나, 사업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부지확 보 및 관리 주체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p.457)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된 신 규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는 7억 9천3백만 원을 편성·제출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¹⁰⁾에서는 장애인을 고령자, 임산 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와 함께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11)에서는 교통약자 역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2년 2월말 기준 서울시 장애인은 약 39만 명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4.1%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약 23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12)

¹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 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¹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 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¹²⁾ 장애인복지정책과-21769(2022.4.18.).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지역 내(시·도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2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3)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임.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 시스템 예산편성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평가위원 심의수당 3,000,000원	=	3,000천원
사	무	관	리	비	증감사유		
					○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여 위원 수당		
					○시스템 개발 514,826,000원	=	514,826천원
					○감리비 76,222,000원	=	76,222천원
전	산	개	발	비	○개인정보 영향평가비 65,876,000원	=	65,876천원
					○HW 및 SW 구매 133,130,000원	=	133,130천원
					증감사유		
					○ 장애인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신	l규 편성	

○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기관에서는 장애인 사용 버스요금의 정산 및 환급업무 처리, 서울시 장애인 현황(전입·전출 등) 및 카드 발급현 황 등 변동사항을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관리하고. 타 시스템(티머니.

¹³⁾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8.19.). "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

신한카드 등)과의 연계로 버스요금 환급, 정산처리를 자동화하고자 하고 있음.

(표) 시스템 기능개발 내용

사용자(장애인) 측면	관리자(서울시) 측면
 회원 가입/정보 변경 버스요금 지원 신청 (최초 1회) 버스요금 환급(지원) 내역 확인 게시판 이용 (공지사항/Q&A) 	· 회원(대상자) 자격 확인·관리 · 교통카드 사용내역, 지원/환급 내역 · 지원현황 및 예산 관리, 이용 통계 · 게시판 관리 · 외부시스템 정보 연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서울시 장애인 여 부 변동내역)

○ 집행기관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23년 7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 하여 이용할 경우 월 단위로 정산하여 실비 요금 환급

○ 사업범위 :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환승시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약 39만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금액 : 이용금액 전액 ※타 사업과 중복시 차감액 지원

○ 지원방법 : 장애인 선결제 후 버스 이용금액을 장애인에게 환급

○ 시행시기 : 2023년 7월

- 해당 사업은 '23년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 겠음. 또한, 복지정책실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¹⁴⁾를 각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당초 요구한 7억 9,305만원에서 2억 1,579만원을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고려해 사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

(단위: 천원)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93,055	3,000	790,055	574,265	△215,790
응용SW 신규개발	514,826	0	514,826	439,899	△74,927
감리비	76,223	0	76,223	67,642	△8,581
개인정보영향평가	65,876	0	65,876	53,524	△12,352
상용SW구매	15,650	0	15,650	13,200	△2,450
HW구매	117,480	0	117,480	0	△117,480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000	3,000	0	0	△0

○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본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수준을 제공하고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투자확대를 유도

¹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219(2022.7.8.), 서울특별시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하여 교통시책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임.

○ 복지정책실에서는 시스템 구축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 추계, 지원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